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6.

발 의 자 : 김병주 · 허성무 · 황명선
김태선 · 채현일 · 박희승
박지혜 · 정을호 · 윤후덕
윤준병 · 이언주 · 한준호
조정식 · 박 정 · 박찬대
양문석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(이하 “군유휴지등”이라 함)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을 받았고,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문제를 겪고 있음.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 기업 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·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

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려는 것임(안 제80조의2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 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705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의2의 제목 중 “기회발전특구로의”를 “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다)”를 “한다) 및 「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에 따른 군유휴지등(이하 이 조에서 “군유휴지등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기회발전특구로”를 “기회발전특구 또는 군유휴지등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기회발전특구”를 “기회발전특구 또는 군유휴지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0조의2(<u>기회발전특구로의</u> 이 전 등에 대한 감면) ① 「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(이하 이 조에서 “기회발전특구”라 <u>한다</u>)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.	제80조의2(<u>기회발전특구</u> 등으로 <u>의</u> 이전 등에 대한 감면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한 다) 및 「 <u>군유휴지 및 군유휴 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</u> 」 제3조에 따른 <u>군 유휴지등</u> (이하 이 조에서 “ <u>군 유휴지등</u> 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② 수도권(인구감소지역 또는 「 <u>접경지역 지원 특별법</u> 」 제2 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 외한다)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 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<u>기회발전특구</u>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.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, 업종,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1. 2. (생략) ③ <u>기회발전특구</u>에서 공장을 신설·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. 이 경우 공장의 범위, 업종,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1. 2. (생략)	----- -<u>기회발전특구 또는 군유휴지</u> <u>등으로</u>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③ <u>기회발전특구 또는 군유휴지</u> <u>등</u>----- ----- -----.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
---	---